

기술위원회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부식학회(이하 “본회”라고 칭함) 정관 제4조(사업) 및, 제7조(위원회의 설치)에 의거, 본회의 사업중 조사, 연구, 교육 및 대외용역 등을 담당하는 기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임무) 기술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식·방식과 관련한 조사, 연구사업
2. 부식관련 용어의 제정
3. 대학(전문대학, 대학원)의 부식학 교육과 관련된 사항
4. 산업체인력의 재교육
5. 대외 용역
6.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 3 조(구성) 기술위원회는 기술담당 부회장, 기술이사 및 약간명의 기술위원으로 구성한다. 기술담당위원장은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조(의무와 권한) 기술위원회는 제2조 각항의 사업을 기획, 실시하며, 위원회의 결의사항 및 경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조(회의 성원 및 의결)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모든 회의의 성원은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단, 불참시에는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3. 의결은 투의 결과를 표결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에게 일임한다.

제 6 조(재정) 1. 기술위원회는 차년도의 사업계획과 그에 필요한 예산안을 수립하여 차년도 예산안편성 이전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년도 책정된 예산은 위원장이 집행한다.

2. 사업 종료후의 수입은 모두 본회에 귀속된다.

제 7 조(소위원회 구성) 기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업무별 또는 지역적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분담시킬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7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